

# 公益事業施行으로 인한 漁業의 間接被害 補償額 算出方法에 關한 研究

김기대\* · 김병호\*\*

## A Study on Calculation Method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Damage of Fishery by Undertaking Public Project

Kim, Ki-Dae · Kim, Byung-Ho

### 〈 목 차 〉

I. 서 론	IV. 간접어업피해보상의 합리적인 산출 방안 제시
II.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처분 보상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V. 요약 및 결론
III. 실제 피해발생기간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당위성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어업의 간접피해보상이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재산적 전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제정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의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sup>1)</sup>(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6조에서는 권리에 대한

접수 : 2006년 2월 11일      게재확정 : 2006년 3월 20일

\*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이사(Corresponding author : 051-632-3300)

\*\*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

1) 기존의 보상법제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과 「토지수용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절차의 중복과 법제도 간의 충돌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들 법률을 폐지하고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보상의 근거 규정을 두고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 63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각각 사업시행 지구내(직접 피해구역)와 사업시행지구 밖(간접피해구역)의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피해보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어업에 대한 간접피해보상방법이 사전보상에서 사후보상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피해액을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피해액 산출의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되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문제점 가운데에서 토지보상법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산출기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피해기간과 관련하여 간접피해보상액 산출을 위한 피해기간의 적용을 실제 피해발생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어업의 취소에 따른 보상기간<sup>2)</sup>의 범위내에서 실제피해발생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해당어업의 허가 등 잔여유효기간<sup>3)</sup>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피해발생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면서 피해기간 적용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피해어업인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각하게 됨으로써 공익사업시행의 차질은 물론, 사회문제화 되기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액 산정시 피해기간의 합리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후, 토지보상법상에 미비되어 있는 어업의 간접피해보상의 합리적인 산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어업인간의 보상에 관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이하에서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처분보상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과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실제피해기간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어업에 있어서 간접피해보상의 합리적인 산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2)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의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에서는 면허어업의 취소보상기간은 연리 12%에 의거 수익환원하면 8.33년이 되며, 허가 및 신고어업의 취소보상액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을 지급하므로 취소보상기간은 3년임.
  - 3)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최초면허를 받은 경우 10년이며, 10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허가가 가능하므로 법정최고 유효기간은 20년이며, 허가 및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임.(수산업법 제14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 제1항)

## II.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처분보상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 1.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처분보상

#### 1) 어업처분의 의의

어업처분이란 행정관청이 어업에 관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일체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은 公益上必要에 따라 면허·허가·신고어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서 어업의 취소·정지·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또는 면허기간 연장에 대한 거부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업손실에 대한 財産的 填補이다.

어업처분의 원인으로는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동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 제74조 제2항의 경우, 즉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군사훈련 및 국방상 필요, 공익상 필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어업처분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손실액의 산출방법

어업처분에 따른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별표4>에서 면허어업, 허가 및 신고어업이 취소·정지·제한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어업처분에 따른 손실액 산출방법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3) 보상절차 및 한계성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처분에 따른 보상절차는 공익상 필요에 의거 행정관청이 먼저 어업처분을 행한 후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보상청구에 의하여 보상을 집행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보상은 수산업법에 의한 보상절차를 따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즉, 행정관청으로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예상지역의 범위·피해정도 및 어업처분 대상에 대한 직접판단이 곤란하므로 실무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보상은 토지보상법의 절차에 따라 행한 후 보상의 후속절차로서 어업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 2. 토지보상법에 의한 어업피해보상

#### 1) 직접피해구역내의 어업보상

토지보상법에서는 어업보상에 관한 규정을 보상대상 어업의 위치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지구내의 어업보상과 시행지구 밖의 어업보상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를 직접피해구역이라 하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을 간접피

해구역이라 한다.

즉, 직접피해구역이란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이루어지는 구역이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는 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직접피해구역 내에 소재하는 어업에 대해서는 어업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의 절차에 따라 강제 수용도 가능하다.<sup>4)</sup>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는 직접피해구역의 어업보상 평가방법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어업손실액의 산출방법, 기준 등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2) 간접피해구역에 대한 어업보상

### (1) 근거규정

간접피해구역이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인근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구역을 말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 (2) 간접피해 보상의 요건

#### 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일 것

공익사업시행지구란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 지구 등과 같이 토지 등(어업권을 포함)의 취득이나 권리의 소멸이 수반되는 직접사업시행지구를 뜻하며, 간접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이다.

#### ②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신고를 마친 어업일 것

어업에 대한 간접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하는 경우를 보상대상으로 한다.

#### ③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새로이 제정된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당사자의 협의 성립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간접피해구역은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

---

4) 면허어업 뿐만 아니라 허가·신고어업에 대해서도 보상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결과를 보면 「...어업권이나 사회통념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어업(허가 등의 어업)등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수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시하고 있음.(토정 58307 - 1618, 94.11.2)

역이므로 어업권 등에 대한 강제수용은 불가능하며, 사업시행자와 당해 피해어업인 간의 피해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sup>5)</sup>. 또한 보상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민사소송으로써 어업의 간접피해보상을 해결하여야 한다.

### (3) 간접피해 보상의 여타 문제

#### ① 보상기준일

직접피해구역내의 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의거 보상계획의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며, 보상대상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간접피해구역에는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사업인정고시 후 간접피해지역내에서 신규의 면허, 허가·신고어업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배제하거나 보상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sup>6)</sup>.

#### ② 보상금 지급시점의 문제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여 보상시기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상시점도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 ③ 피해기간 적용의 논란

직접피해구역은 대부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 등이 취소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등의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산출하므로 피해기간의 적용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기간의 적용을 실제 피해기간으로 산정해야 할지, 아니면 실제 피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업권 등의 잔존 유효기간으로 해야 할지 등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 ④ 보상액 산정기준의 불명확성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의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상액 산출기준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5) 참고로 대법원 1998. 1. 20. 선고 95다 29161호 판결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를 이루지 못한 이상 공득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간접영업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피해어업인 간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먼저 체결한 후, 합의서 내용에 보상기준일을 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3. 어업처분보상과 어업피해보상의 차이점

#### 1) 보상원인의 차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처분보상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어업의 취소·정지·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또는 면허기간 연장에 대한 거부처분 등 사전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발생이 보상의 원인인 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어업이 제한·정지·취소되거나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사후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보상과 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간접피해보상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보상의 원인이다.

#### 2) 보상절차 및 방법상의 차이

수산업법상의 어업보상 관련규정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일방적 조치로서 어업권 등에 대해 먼저 제한을 가한 후 이러한 행정처분에 따른 보상의 방법을 정한 것인 데에 반해, 토지보상법상의 어업손실보상 관련규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장애에 발생할 어업손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3) 보상에 있어 어업제한의 개념적 차이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한보상의 개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관청이 어업에 대한 제한처분을 행한 데에 따른 보상으로 개념상 한정된다. 한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어업보상에서 통상 사용되고 있는 제한보상의 개념은 수산업법상 제한처분으로 인한 보상과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간접피해에 대한 부분피해보상<sup>7)</sup>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4) 제한기간(피해기간) 산정상의 차이

수산업법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처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처분청이 어업의 제한기간을 미리 정하여 처분하게 되므로 수산업법에서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제한기간의 적용방법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토지보상법은 시행규칙 제63조에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어업의 간접피해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액 산출방법 및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간접피해구역의 부분피해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기간 적용방법에 대

---

7) 일반적으로 간접피해구역내의 어업피해보상을 제한보상이라 칭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수산업법에 의한 제한처분으로 인한 보상과 구분되므로 간접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을 부분피해보상이란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음.

하여 사업시행자와 피해어업인 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Ⅲ. 실제 피해발생기간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당위성

#### 1. 피해보상으로서의 간접보상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여 행하는 보상은 피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당해 피해지역내에서 합법적으로 어업허가 등을 득한 후 어업을 행하는 자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거나 보상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 또한, 간접피해구역은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어업권 등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허가갱신 등으로 새로이 면허·허가를 취득하더라도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액의 산정은 실제 피해발생기간과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 2. 어업허가의 특수성과 보상기간

##### 1) 어업에 대한 권리의 영속성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에서는 어업권(면허)의 유효기간은 법적최고기간이 20년인 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액은 면허의 잔여기간과 상관없이「평년수익액/연리(12%)」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하여 영구수익환원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 및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이 5년인 데도 불구하고, 취소되는 경우의 보상금액은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에 상관없이「평년수익액의 3년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어업의 유효기간의 종료가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기존어장에 재면허하는 경우 면허의 우선순위 규정상 기존의 어업권자가 1순위가 되도록 수산업법에서는 규정<sup>8)</sup>하고 있으며, 또한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어업인이 재허가처분의 우선순위<sup>9)</sup>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어업을 영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구적 권리의 성격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8) 수산업법 제13조

9)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제7조

여기서 취소보상금의 산정을 면허의 경우에는 평년수익액의 8.33년분(1/0.12)으로, 그리고 허가 및 신고의 경우는 3년분으로 차등을 둔 것은 면허와 허가 및 신고의 권리성에 차등을 두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 2) 어업허가의 권리화

어업허가는 어선 등 시설물과 함께 매매, 상속, 경매 등 거래의 대상(물론 소유권 변경시 신규 허가처분을 받지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수산업법에서는 각 시·도별로 어업허가건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당해 어업인이 재허가 처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허가는 특허와 같이 하나의 권리로 관념화되어 있다.

## 3) 피해보상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는 사업인정고시후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보상금 지급시기까지는 허가의 유효기간(5년)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간접피해구역에 대한 보상의 경우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보상을 행한다면 보상을 행할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허가어업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신규 허가처분을 받게 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도 없지 않다.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보상대상의 선정 및 피해액산정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에 유효한 허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시기까지 피해지역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허가를 득한 후 어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기존허가와 동일성과 영속성을 확인한 후 실제피해기간 동안의 피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 4) 여타 보상규정과 의 형평성

### (1) 영업보상과의 형평성 문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휴업기간(통상 3개월)의 영업이익(100%)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휴업기간(피해기간) 동안의 영업이익(100%)을 보상하도록 규정<sup>10)</sup>하고 있으므로 어업에 대한 간접보상도 실제 피해발생기간과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출하여야 일반적인 영업에 대한 손실액 보상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10)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2) 어선감척사업 보상과의 비교

해양수산부에서는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근해어선 감척사업과 연안 어업의 어선감척에 있어서도 허가에 대한 권리의 영속성을 인정하여 어업허가의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취소보상금과 어선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치」를 보상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허가 및 신고 어업에 대한 부분손실의 평가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실제피해발생기간 동안의 피해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 3.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와의 비교

일본의 어업보상에 관한 규정은 먼저 어업조정,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권 취소 등의 처분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어업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항만공사, 매립, 준설 등 공공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어업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요강」에 의거 작성된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에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어업보상기준을 요약하면,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및 자유어업의 보상방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어업이 취소되는 경우의 대가보상은 「 $\frac{\text{평년순수익}(\text{총수입} - \text{경영비})}{\text{년이율}(8\%)}$ 」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으로써, 면허어업 뿐 아니라 허가 및 자유어업의 경우에도 어업에 대한 권리의 영속성을 인정하여 영구보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업의 제한보상의 경우에도 동 산식에 어장의존율, 제한기간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제한기간의 산정은 실제피해가 발생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다.

## 4. 간접피해구역에 대한 어업피해보상 이론의 발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피해조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12개의 전문용역기관에서도 어업에 대한 부분피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실제피해발생기간과 피해를 고려하여 수익환원방법에 의하여 피해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지구 인근의 허가 및 신고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간의 적용을 실제피해발생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주요 전문용역기관에서는 실제 피해발생기간에 의하여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sup>11)</sup>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의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간접피해구역에 대한 어업의 부분피해보상을 실시한 용역보고서와 감정평가서 등의 사례를 수집하여 검

11) 해양과학기술연구원(해양과학기술연구원 - 86호, 2005. 2. 4). 한국해양연구원(생물자원 제 05 - 0047 - 1호, 2005. 02. 02)

또한 결과, 아래 < 표1 > 와 같이 초기의 사례인 < 사례1 > 과 < 사례2 > 에서는 허가 및 신고어업의 피해기간의 산정을 실제피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해액은 3년을 기준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 사례3 > ~ < 사례11 > 은 모두 실제 피해 발생 기간에 의거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실시하였다. < 사례1 > 과 < 사례2 > 의 경우는 어업피해액 산정에 관한 이론이 미처 정립되지 못했던 시기의 사례이며, 최근의 사례는 대부분 실제피해발생기간에 의해서 피해액을 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1 > 허가 및 신고어업의 피해기간적용 사례분석표

사례번호	보상시기	사 업 명	어업의 종류	피해산정기간	비 고
사례1	1997. 5	○○○~○○교량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연안어선	3년	사업으로 인한 실제피해기간3년 초과함.
사례2	2000.4	○○○○○○가동및건설공사로인한피해보상	맨손신고 육상양식 해상종묘	3년 3년 3년	가동 및 건설로 인한 피해기간이3년을 초과함.
사례3	1997.3	○○○○유수면(추가)매립으로인한어업피해보상	어선어업	8.33년 8.33년	○○○방출 피해기간영구 항로항만공사로인한 피해기간 영구
사례4	1999.3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구획어업 육상양식 종묘생산 맨손·나잠	9년 9년 9년 9년	공사로 인한 피해 " " "
사례5	2001.4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어업보상	구획어업	3.5년 8.33년	매립, 준설피해기간 항로 개설 피해기간 영구
사례6	2001.7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어선어업	1,654일 (4.5년) ~ 4,225일 (11.5년)	건설에 따른 어선어업의 피해기간을 해당어선별로 구분하여 1,654일(4.5년) ~4,225일(11.57년) 등으로 피해기간을 각각 산정 하여 보상한 사례
사례7	2002.6	○○○유람선 취항에 따른 어업보상	어선어업	8.33년	항로지정 피해기간 영구
사례8	2002.7	○○○○○○○○산업단지 건설사업 어업보상	어선어업	3년8월	공사로 인한 피해
사례9	2002.12	○○하수처리장 방류 관로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어선어업 구획어업	8.33년 8.33년	하수처리장 방류에 따른 피해기간 영구
사례10	2004.2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연안어업 맨손어업 나잠신고	총피해울 총피해울 총피해울	해당 어업에 대하여 총피 해울산정시 한시적 피해 기간과 영구적피해기간을 합산하여 총피해울 산정
사례11	2004.10	○○대교건설사업시행 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어선어업	4년	공사로 인한 피해

## Ⅳ. 간접 어업피해보상의 합리적인 산출방안 제시

### 1. 피해기간의 합리적인 적용방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의 간접피해보상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에 대한 부분피해액 산출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기간 적용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피해어업인 간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업에 대한 간접보상은 피해배상의 성격이라는 점과 어업에 대한 권리의 영속성 등 어업허가의 특수성, 일본의 어업보상제도와 의 형평성, 어업보상 이론 및 헌법상 정당보상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어업에 대한 부분피해액의 산정은 실제피해기간과 피해정도(피해율)를 감안하여 산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 2. 어업의 부분피해액 산출의 합리적인 방법 제시

어업의 부분피해액 산출은 단순히 「평균수익액 × 피해정도(피해율) × 피해기간」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어업에 대한 부분 피해액은 사업시행후 피해가 확인될 때 보상을 행하는 사후보상으로서의 성격과 장래기간동안 계속 발생할 피해액에 대한 사전보상의 성격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액의 산정은 이자율(환원이율)을 고려하여 보상집행시점에서의 피해액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업피해액의 산정은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근원은 이자이론과 시간선호의 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정기간동안 매년 동일한 수익이 실현된다고 할 때, 매년 실현이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현재가치의 총액이 複利現價이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 장래수익에 곱하는 비율을 複利現價率이라 하며,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frac{(1+r)^n - 1}{r(1+r)^n} \quad \text{식 1}$$

여기서  $r$ 은 이자율이며, 수익환원법에서는 환원이율을 말한다. 어떤 물건에서 발생하는 순수익( $a$ )이  $n$ 년 동안 지속된다고 할 때 대상물건의 收益價格( $P$ )은 아래의 식2에 의하여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평가방법을 年金法(Inwood 방식)이라 한다.

$$P = a \times \frac{(1+r)^n - 1}{r(1+r)^n} \quad \text{식 2}$$

또한, 매년의 순수익이 일정하고 그것이 무한히 계속되는 경우 순수익의 현재가치 총액은,

$$P = a \left\{ \frac{1}{(1+r)} + \frac{1}{(1+r)^2} + \frac{1}{(1+r)^3} + \dots + \frac{1}{(1+r)^n} + \dots \right\} \text{로 되며, } \{ \} \text{ 내는 무한등비}$$

급수를 이루므로 이의 합계공식  $S_n = \frac{\text{초항}}{1 - \text{공비}}$  에 대입하여 합계액을 구하면, 아래의 식3과 같다.

$$P = a \times \frac{\frac{1}{(1+r)}}{1 - \frac{1}{1+r}} = a \times \left( \frac{1}{1+r} \times \frac{1+r}{1+r-1} \right) = \frac{a}{r} \quad \text{식 3}$$

즉, 물건의 수익이 장래의 기간동안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수익가격은 순수익  $a$ 를 환원이율  $r$ 로 나눈 결과가 되며, 이러한 평가방법을 永久收益還元法이라 한다.

따라서, 어업의 간접피해보상에 있어 장래기간에 발생할 피해액의 산출은 상기의 년금법과 영구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어업에 대한 부분피해액 산출방식을 ①사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피해발생 초기시점에 장래의 기간동안 발생할 피해액을 산출하는 경우와, ② 어업에 대한 부분피해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할 피해를 같이 산출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장래에 발생할 피해액의 산출

#### (1) 부분피해가 장래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장래의 일정기간에 평균연간어업피해율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의 피해가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경우, 현재시점에서의 피해액의 산정은 수익환원방식중 년금법에 의하여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

즉, 부분피해액  $P = a' \times \frac{(1+r)^n - 1}{r(1+r)^n}$  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여기서,  $a'$ 는 평균연간피해액으로 「평균수익액( $\pi$ ) 연간어업피해율( $\mu$ )」에 의하여 산출하며,  $r$ 은 환원이율이다.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에서 면허어업의 취소에 따른 보

상액 산정시 환원이율을 12%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어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가 및 신고어업의 부분피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환원이율  $r$ 은 12%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sup>12)</sup>

(2) 부분피해가 장래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평균연간어업피해율에 해당하는 피해가 장래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현재시점에서 피해액의 산정은 수익환원방식중 영구 수익환원방법에 의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즉, 어업의 부분피해액  $P = \frac{a'}{r}$ 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과거발생 피해와 장래에 발생할 피해를 동시에 산출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는 간접피해구역에 대한 어업의 부분피해보상은 사업시행후 실제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어업에 대한 간접피해보상액은 대부분 과거에 이미 발생한 피해와 장래의 기간에 발생할 피해액을 동시에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어업피해액의 산출은 과거 발생한 피해액에 보상시점 현재까지의 복리이치(환원이율)를 가산하여 산정한 과거의 피해액과 향후 발생할 피해액을 현재 시점에서 복리환원한 피해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과거 발생한 피해와 장래 발생할 한시적 피해를 동시에 산출하는 경우

보상시점 현재에 있어서 과거 이미 발생한 피해금액과 장래의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발생할 피해액을 함께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① 方法1

첫번째 방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은 평균연간어업피해율에 해당하는 피해액을 보상시점을 기준으로 년금증가공식<sup>13)</sup>에 의하여 산정하고, 장래의 기간에 일정하게 발생할 피해액에 대해서는 년금현가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12) 수산업법에서는 면허어업의 취소보상액 산정시 적용되는 환원이율로서 연리 12%의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의 지속적인 저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연리 12%의 환원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보상액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원이율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 년금증가는 각 연말에 지급될 연금 1원을 연이율  $r$ 로 적립한  $n$ 년후의 기말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산식은  $S = A \times \frac{(1+r)^n - 1}{r}$ 이다. 여기서  $A$ 는 각년도 말에 적립할 년금이다.

즉, 어업의 부분피해액은  $P = a' \left[ \frac{(1+r)^{n'} - 1}{r} + \frac{(1+r)^n - 1}{r(1+r)^n} \right]$ 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여기서,  $n'$ 은 과거 피해발생기간으로,  $N$ (총 피해발생기간) -  $n$ (장래피해발생기간)에 의하여 산출된다.

② 方法2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을 피해발생전 사전보상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업의 간접피해보상도 피해발생전에 일괄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두번째의 방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시점에 매년 발생할 피해액을 사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전액보상 받았어야 할 금액을 년금법에 의하여 먼저 산출한 후 보상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현재시점까지의 복리이자를 가산하여 보상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매년 일정하게 발생할 피해액을 총피해기간  $N(n'+n)$ 에 의해 년금법으로 피해액을 산정한 후, 복리종가공식<sup>14)</sup>을 적용하여 보상시점 현재의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즉, 부분피해액은  $P = \left[ a' \times \frac{(1+r)^N - 1}{r(1+r)^N} \right] \times (1+r)^{n'}$ 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2) 과거 발생피해와 장래기간 영구적인 피해액을 동시에 산출하는 경우

이것은 피해어업인이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피해발생 이전에 사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이미 받았어야 할 보상금을 일정기간 경과후 피해가 확인되고나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부분피해액의 산정은 위의 方法2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먼저 피해발생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을 산정한 후 피해발생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복리이자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즉, 부분피해액은  $P = \frac{a'}{r} \times (1+r)^{n'}$ 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상기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어업의 부분피해액은 어업의 취소로 인한 보상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피해발생기간의 유형별로 제시한 어업의 부분피해액 산출방식을 요약하면 아래의 < 표2 > 와 같다.

14) 원금 1원을 년이율  $r$ 로,  $n$ 년간 복리계산한  $n$ 년 말의 원리금 합계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산식은  $(1+r)^n$ 으로 나타낸다.

< 표2 > 어업의 부분피해액 산출식

구 분	피해기간이 한시적인 경우	피해기간이 영구적인 경우
장래 발생할 피해액의 산출 (사전보상)	$P = a' \times \frac{(1+r)^n - 1}{r(1+r)^n}$	$P = \frac{a'}{r}$
과거 발생한 피해와 장래 발생할 피해액의 산출	$P = a' \times \left[ \frac{(1+r)^{n'} - 1}{r} + \frac{(1+r)^n - 1}{r(1+r)^n} \right]$ 또는 $P = \left[ a' \times \frac{(1+r)^N - 1}{r(1+r)^N} \right] \times (1+r)^{n'}$	$P = \frac{a'}{r} \times (1+r)^{n'}$

주) P : 어업의 부분피해액, a' : 평균연간피해액, n : 장래피해발생기간, n' : 과거피해발생기간, N : 총피해발생기간(n+n'), r : 환원이율(12%), a' : 「평년수익액(π) × 연간어업피해율(μ)」, 단, P는 어업의 취소로 인한 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3. 피해발생유형별 어업의 부분피해액 산출 예시

어업의 부분피해액 산출방법은 크게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발생기간이 한시적인 경우와 영구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달리 적용하며, 또한 피해를 받기 전에 사전보상을 행하는 경우와 일정기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발생한 피해 및 장래에 발생할 피해를 같이 산정하는 경우로 세분하여 산출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한시적인 경우와 영구적인 경우의 피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피해를 이미 받고 있는 시점에서 보상을 행하는 경우의 피해액 산정방법을 예시하였다.

【 사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밖의 허가어업에 부분피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때 평년수익액(π) : 2,000만원, 연간어업피해율(μ) : 3%, 과거피해발생기간(n')은 3년이며, 향후 장래 피해발생기간(n)이 10년인 경우와 영구적인 경우의 현재시점에서 부분피해액을 산정하라.

#### 1) 장래 피해발생기간이 10년인 경우

##### (1) 方法1

이 방법은 현재의 보상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발생한 피해액을 년금증가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장래기간 동안 발생할 피해액을 년금현가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피해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P = a' \times \left[ \frac{(1+r)^{n'} - 1}{r} + \frac{(1+r)^n - 1}{r(1+r)^n} \right] \text{의 산식에 대입하여 풀면,}$$

$$= 60 \text{ 만 원} \times \left[ \frac{(1+0.12)^3 - 1}{0.12} + \frac{(1+0.12)^{10} - 1}{0.12(1+0.12)^{10}} \right]$$

$$= 5,414,773 \text{ 원 이 된다.}$$

(2) 方法2

이 방법은 사전보상원칙에 근거하여 피해발생 전에 전액 보상했어야 할 보상금액을 년금법에 의하여 먼저 산정한 후 보상을 집행하고자 하는 현재시점까지의 복리이자를 가산하여 피해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P = \left[ a' \times \frac{(1+r)^N - 1}{r(1+r)^N} \right] \times (1+r)^n \text{의 공식에 대입하여 풀면,}$$

$$= 60 \text{ 만 원} \times \left[ \frac{(1+0.12)^{13} - 1}{0.12(1+0.12)^{13}} \right] \times (1+0.12)^3$$

$$= 5,414,773 \text{ 원 이 된다.}$$

이와 같이 어업의 부분피해액은 과거 3년간의 실제발생한 피해와 향후 10년간 발생할 피해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두 가지 방법모두 5,414,773원으로, 이는 허가어업의 최소보상금액인 60,000,000원(평년수익액의 3년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2) 장래에도 피해가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과거 발생한 피해와 향후 발생할 영구적인 피해액을 동시에 산출하는 경우로서 부분피해액의 산정은 사전보상을 전제로 한 피해발생전의 시점을 기준으로한 영구피해액을 산출한 후 보상시점 현재까지의 복리이자를 가산하여 피해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은 다음과 같다.

$$P = \frac{a'}{r} \times (1+r)^n \text{의 산식에 대입하여 풀면,}$$

$$P = \frac{60 \text{ 만 원}}{0.12} \times (1+0.12)^3 = 7,024,640 \text{ 원으로, 허가 최소보상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 V. 요약 및 결론

최근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토지보상법에서는 어업보상의 방법을 사업시행지구 내와 사업시행지구 밖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사업시행지구 밖의 부분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액 산출기준을 명확히 정해 두지 않음으로써 피해액 산출방법과 기준,



보상시기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피해 어업인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간접피해구역에 대한 어업피해보상의 많은 문제 중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피해기간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보상액 산정에 있어 어업에 대한 피해기간의 적용방법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미비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액 산정에 있어 피해기간의 합리적인 적용방법과 피해액 산출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전제로서 제시한 실제 피해발생기간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당위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피해구역은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취득한 어업에 대한 보상배제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게 되므로,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허가 갱신 등으로 새로이 허가를 취득하더라도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여 행하는 보상은 피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둘째, 어업허가의 특수성과 보상기간의 관계이다.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에서는 어업이 취소되는 경우의 보상액의 산정은 면허 및 허가의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면허어업은 영구수익을 환원하여 산출하며, 허가·신고어업은 「평균수익액의 3년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어업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어업인이 우선순위를 가짐으로써 어업의 유효기간의 종료가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해당 어업이 취소되는 경우의 대가보상은 「평균순수익(총수입 - 경영비) / 년이율(8%)」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으로써 면허어업 뿐만 아니라 허가 및 자유어업의 경우에도 어업에 대한 권리의 영속성을 인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제한보상의 경우에도 동 산식에 어장의존율, 제한기간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제한기간의 산정은 실제피해가 발생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다.

넷째,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수산에 관한 전문용역기관에서도 어업에 대한 부분피해액의 산정은 실제피해발생기간과 피해율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의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보상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어업의 잔여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발생기간 동안의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행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으로 인한 실제 피해

발생기간과 무관하게 보상기간을 제한하여 피해액을 산출한다면 헌법상 “정당한 보상”규정에 위배된다.

따라서 피해액의 산출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발생기간과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취소에 따른 보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의 취소에 따른 보상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어업에 대한 부분피해액 산출방식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발생시기에 따라서 ①어업에 대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피해액을 현재시점에서 산출하는 경우와 ②어업에 대한 부분피해를 수년간 받고 있는 현재시점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할 피해를 같이 산출하는 경우 등 피해발생 유형에 따라 피해액 산출방식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상대학교 해양과학 해양산업연구소,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01.
- 박수혁, “사업손실보상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감정평가, 통권 51호, 2002. 07/08, pp.12 - 23.
- 부경대학교 수산과학공동연구소, 창선~삼천포간교량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조사 보고서, 1997.
- 부경대학교 수산과학공동연구소, 다대항 유람선 취항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2002.
- 부경대학교 수산과학공동연구소, 다대항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2004.
-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어업손실평가의 제 문제심포지움 보고서, 1998.
-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부산신항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1999.
-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하동화력발전소 가동 및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2000.
-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삼천포화력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해양영향조사 보고서, 2001.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제4판, 삼영사, 1991.
- 송태영, 『감정평가실무』, 제5정판, 경영문화원, 1993.
- 임석희, “공익사업에 따른 간접침해의 문제와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안”, 감정평가, 통권 44호, 2001. 5/6, pp.41 - 51.
- 여수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삼일자원비축 산업단지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 최종 보고서, 2002.
- 한국전력공사, 당진화력 공유수면(추가) 매립으로 인한 어업피해영향조사 최종보고서, 1997.
- 한국해양연구원,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2002.
-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관련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2001.
- 황갑수, 『실무위주의 수산업법 해설』, 전정판, 수협중앙회, 2004.

## **A Study on Calculation Method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Damage of Fishery by Undertaking Public Project**

Kim, Ki-Dae · Kim, Byung-Ho

### **Abstract**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and Others for Public Project that is recently enacted and implemen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nd Compensation Act’) the compensation is required to make “When the Actual Damage Amount” is confirmed for the damage in fishery affairs that is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area.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business on the indirect damage area has been excluded from the advance compensation subject to conflict with the existing laws on fishery business compensation with the controversy in method, procedure, time and others to confirm the actual damage amount, and it lacks the standard of calculation for detailed compensation on partial damages outside of business implementation area, which caused the ceaseless conflicts and struggles betwe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ty and the victimized fishermen regard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damages, standard, compensation period and others.

In particular, from the numerous problems in damage compensation in fishery on the indirect damage area, the most recent problem emerged is the issue on application method of damage period in calculating the damage compensation amount that the struggle has been deepened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ty and the victimized fishermen without the stipulation on the compensation, that caused the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the public project and other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is study, the reasonable application method for the damage period and the calculation plan of the damage amount for calculating the damages on fishery industry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implementation zone that is not fully

specified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e indirect damage area is not influenced for the notification of project recognition, and the compensation to undertake with the damage in the fishery industry in project implementation area to have the nature of damage compensation, the right to engage in fishery industry has the perpetual nature of rights, the fishery damage compensation system of Japan also recognizes the perpetual right on fishery industry to calculate the compensation amount,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mount has been exercised for the period of actual damage occurrence period regardless of remaining effective period for most of fishery permit and license for fishery compensation outsid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a following the recent various public projec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ory on fishery loss compensation that the calculation of damage amount on the fishery industry outsid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zone would be prudent to compensate by calculating the applicable damages during the period of actual damages, and by doing so, the 'just compensation'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may be materialized.

Therefore, the calculation of the damage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ject shall consider the actual period of damages and the degree of damage from the public project to calculate by the income capitalization method, however, considering the equitable consideration with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cancellation, it shall not exceed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fishery businesses.

Furthermore, the calculation method of partial damage amount on the fishery business follow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shall apply, depending on the period of damage occurrence, by ① the case of calculating the future damage amount at the present time, and ② calculating the damag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ime as well as the damage to be incurred later, by selecting the calculation method for damages following the damage occurrence type.

key words : indirect damage area, average yield rate, income capitalization method, damage rate
---